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8-773호

이 조례 및 규칙(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8년 11월 6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정부 정책의 한계를 채우는 자치단체 차원의 맞춤형 추가급여 지원 필요

○ 이에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저소득 노인 지원에 관한 명확한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저소득 노인을 위한 부가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법령 변경으로 조례에 반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가 맞춤형 수급자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 반영(안제2조)
-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연금이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 반영(안제2조)

○ 저소득 노인 지원 근거 마련(안제3조)

- 만65세이상 저소득 맞춤형 생활급여 추가지원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참조 : 중구청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 전화 : 3396-5368, FAX : 3396-8730, E-mail : stoptj@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 1.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수급권자”를 “수급권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

제3조제8호를 같은 조 제9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만65세 이상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저소득 어르신 맞춤형 생활급여 추가지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지원대상자) (생 략)	제2조(지원대상자) (현행과 같음)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1.----------수급권자(생계,의료,주거, 교육급여) ----------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7.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연금 수급 대상자	7.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
제3조(지원내용) (생 략)	제3조(지원내용) (현행과 같음)
1. ~ 7. (생 략)	1. ~ 7.(현행과 같음)
<신 설>	8. 만65세이상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저소득 어르신 맞춤형 생활급여 추가지원
8. (생 략)	9. (현행 제8호와 같음)